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 원 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 [1심]	사건유형	기타(정보공개)
원 고	□□□ 외 12명	피 고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판결선고일	[1심]2019. 11. 15. 원고패소	비 고	
사건개요	❍ 피고는 2018. 3. 11. ○○○로부터 인천◇◇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실시한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할 것을 요청받았고, 피고는 2018. 3. 20. 3년간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수사재판중인 유치원은 감사결과가 없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치원 및 원장 실명은 비공개하는 결정을 함. ❍ ○○○는 2018. 5. 31. 피고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호) 피고가 패소하여 2019. 4. 24.에 확정됨. ❍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를 부담하기에 2019. 4. 29. 관내 사립유치원의 유치원 및 원장명 부분의 공개에 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유치원에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하였고, 2019. 5. 15. 감사결과 적발된 유치원명 및 원장명에 대하여 2019. 6. 17.자로 공개하는 정보공개 결정을 함. ❍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이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 이 사건 각 정보는 피고 관할 유치원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실시한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에 불과하므로 위 명단에 감사가 종료된 원장 이름뿐만 아니라 수사 또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가 중단된 원장의 이름이 포함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 이 사건 각 정보 중 원장 명단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치원장의 성명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공성을 가지는 학교의 일종으로서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설립 또는 중요사항 변경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바, 사립유치원 운영 특히 그 회계업무는 강한 공공적 성격을 띠는 점, 그리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유치원의 매년 1회 이상 교원에 관한 사항,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교육감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유치원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회계업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정보 중 유치원장 명단이 사생활에 해당한다거나, 그 공개로 인해 유치원장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이 정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살피건데,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보공개청구인인 ○○○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또한 그 주장 자체로 위 정보공개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거나, 오로지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나 원고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다거나, 또는 무익한 청구를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